

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

(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0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박영한,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 이병도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배, 이종태, 이종환, 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역은 일평균 약 6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내의 교통 중심지임.
- 그러나,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광장은 ‘종교단체 전도 소음 및 노숙인들의 음주,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지속되고 있음.’
 - 서울역광장 주변 노숙인 1,142명
 - 서울역광장에 기독교, 천리교 등 21개 단체·개인 892명 종교활동 및 각종 시위 활동
- 또한 최근 알코올중독 및 정신질환자의 강력 사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.
- 이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역광장을 정의함. (안 제2조)
- 나.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다.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라. 서울역광장의 집회 및 시위 금지를 규정함. (안 제5조)
- 마. 서울역광장의 금주구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바.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)
- 사.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건강증진법」
- 다. 기타 : <첨부사항>
 - 서울역 광장 주변 직장인, 사업자 등 501명 탄원서
 - 서울역 민원접수 현황

서울특별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서울역광장”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 일원에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간의 협력에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역광장 이용자는 건전한 시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소음 등의 유발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의 지원)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서울역광장에서의 금연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

2. 서울역광장 노숙인의 주거와 보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

3. 그 밖에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

제5조(집회 및 시위) ① 서울역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②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서울역광장에서 누구든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을 주최하거나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금주구역 지정)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역광장을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의 강화) ①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, 한국철도공사, 관할 경찰서, 자치구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(이하 “관계기관 등”이라 한다)과의 협력에 동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8조(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) 시장은 서울역광장의 이미지 제

고와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시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